

2025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2025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1. 사 업 명 : 2025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남양주시)
2. 사업기간 : 2025. 6. ~ 2025. 12.
3. 사 업 량 : 1대
4. 사 업 비 : 35,000천원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사업장 자부담 10%)
5. 지원기준 및 시설

○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천 원)

구 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최대)				자부담 (10%)
		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비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35,000	31,500	17,500	4,200	9,800	3,500

-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2025. 1.)』에 따름.
- ※ 보조금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송풍기, 배관 등) 설치비 포함이며, 지원대상 음식점의 면적·테이블 수·처리용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설치비가 지원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 지원, 설치비 세부 산정내역 제출 필수)
- ※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시설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 성능이 확인된 저감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점 외부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악취를 제거 또는 저감하거나, 실내에서 직접 처리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정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제외

구 분		내 용
미세먼지 · 악취 방지시설	세라믹 필터	미세 다공성 세라믹(자동 재생 가능) 소재 필터와 흡착제를 이용하여 냄새 물질을 흡착·제거하는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다공성 흡착제(활성탄, 제올라이트 등)를 이용하여 냄새 물질을 흡착·제거하는 시설
	전기 집진시설	미세 입자에 고전압의 직류 전기로 음전하를 부여하여, 전기장 내에서 양전하를 띤 집진판으로 이동하여 냄새 물질을 부착·제거하는 시설
	복합 방지시설	2가지 이상의 미세먼지·악취 저감기술이 적용된 시설
	기타 시설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방지시설 이외의 시설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등 공인기관에서 미세먼지·악취 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6.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소재한 직화구이 등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3년 이내 설치된 방지시설이 있는 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시설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선정방법 :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점검, 3차 선정심사 위원회 심사 선정

○ 선정심사 기준 (100점 만점)

심사항목	내용	용
지원 필요성	- 최근 3년 이내 민원 발생 등 설치 지원 필요성 - 사업장 주변 환경여건 (아파트, 주거지역 인접 등) -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사업장)	30
사업주의 의지	- 사업주의 악취저감 의지 및 노력	10
방지시설 적정성 및 기대효과	- 설치 사업장 업종의 적합성	40
	- 방지시설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설치 후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예상 효과 등	
사후관리 적정성	-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	20
계		100

※ 1순위 : 심사 평가점수 높은 순 선정

※ 2순위 : “1순위”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파트, 주택 등 주거건물이 인접한 사업장 우선

※ 3순위 : “1, 2순위”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 우선 (지원조건 이행을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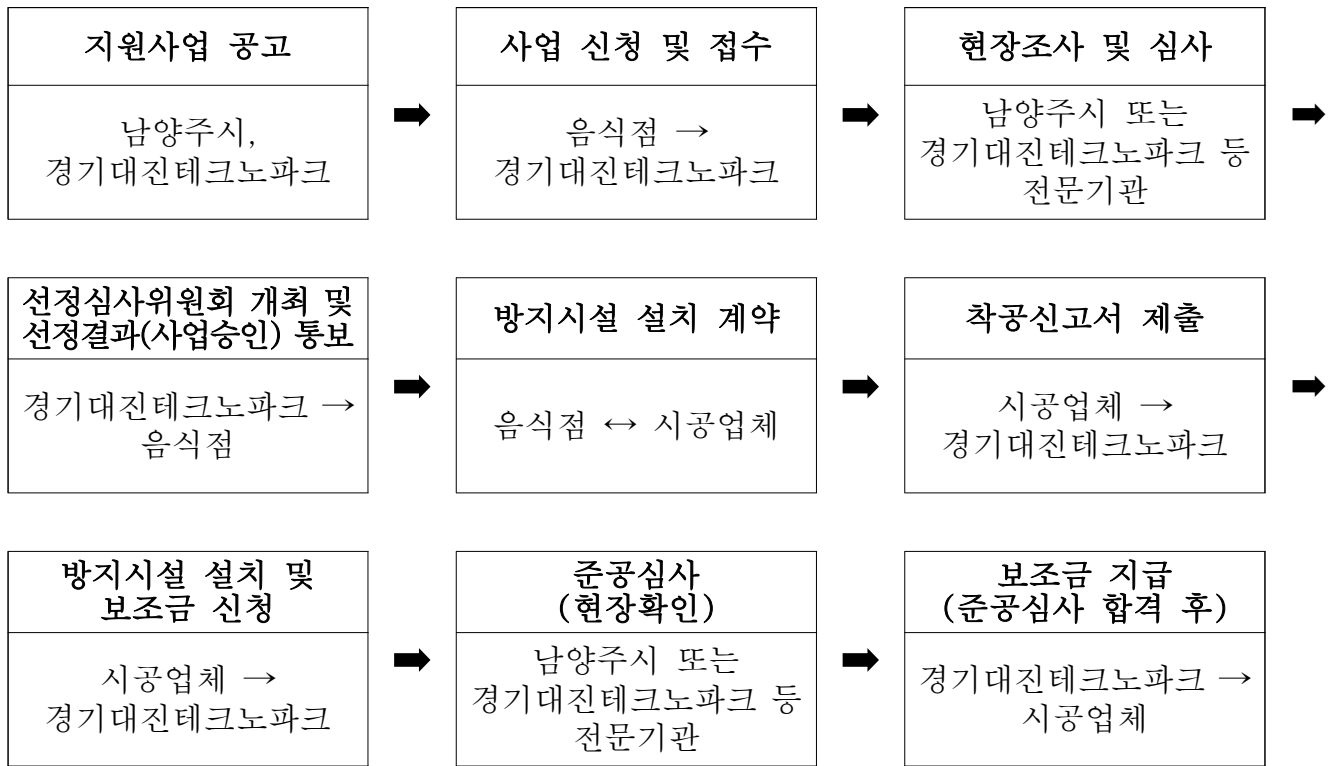
7. 지원신청

○ 접수기간 : 2025. 6. 0.(O) 09:00 ~ 6. 00.(O) 18:00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문의처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 031-539-5105)
- 접수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자작동)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비전사업팀 우)11158
- 접수방법 : 시공업체 선정 후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 기간 내 도착한 우편에 한함)
- “붙임 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신청 : 신청인이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제출

○ 신청서 등 검토 :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 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사본)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신청인은 착공신고서[붙임 9]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시공업체와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사본),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 신청인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사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신청인이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보조금은 시공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 시공업체가 방지사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사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시공업체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방지사설 설치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설치 완료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방지사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준공검사 및 보조금 신청 : 시공업체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방지사설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업체는 방지사설 설치 사업장(음식점) 대표의 위임장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 신청인(음식점)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방지사설 적정 설치와 정상작동 여부 현장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 방지사설이 당초 설치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9. 보조금 반환 및 사후관리

○ 보조금 반환

-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반환액

$$= \text{보조금 지원액} \times \left[\frac{\{1,095\text{일}(3\text{년}) - \text{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1,095\text{일}(3\text{년})} \right]$$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됨.

-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 조치

※ 3년 이내 동일 업종의 사업장으로 양도할 경우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 사후관리

-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모니터링 의무 (시공업체) : 설치완료일로부터 3년간, 반기별 1회 이상
- 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 (사업장/시공업체) : 설치완료일로부터 3년간
- ※ 설치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의무가 있고, 시공업체는 방지시설의 사후관리를 지원할 의무가 있음.
- ※ 설치 후 3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필수 사항임.

10.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5. 6. 0.(O) 09:00 부터 6. 00.(O) 18:00 까지
- 서류검토, 현장 확인 및 심사 : 2025. 6월 중
-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 2025. 6월 중 개별 통지
- 방지시설 설치 및 준공 : 2025. 7월 ~ 8월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1.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지원 서류나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준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사업본부 비전사업팀 (☎ 031-539-51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구비서류(별지 서식)

■ 신청 시

- ① [붙임 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1부.
- ② [붙임 2]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 ③ [붙임 3] 사업장 위치도 1부.
- ④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⑤ [붙임 5] 이행확인서(수혜사업장, 시공업체) 각 1부.
- ⑥ [붙임 6]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수혜사업장, 시공업체) 각 1부.
- ⑦ [붙임 7]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
- ⑧ [붙임 8]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이용 승낙서(설치요청자와 설치장소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시)
- ⑨ [붙임 12]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수혜사업장, 시공업체) 각 1부.
- ⑩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수혜사업장) 1부.
- ⑪ 영업허가(신고)증 1부.
- ⑫ 사업자등록증(수혜사업장, 시공업체) 각 1부.

■ 착공 시

- ① [붙임 9]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1부.
- ② 계약서(사본) 1부.
- ③ 자부담 입금 확인증 1부.
- ④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 ⑤ 개선계획서 각 1부.

■ 선금 신청 시 (보조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 신청 가능)

- ① [붙임 3] 사업장 위치도 1부.
- ② [붙임 7]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
- ③ [붙임 11] 보조금(선금) 지급 신청서 1부.
- ④ [붙임 13] 선금 지출 계획서(시공업체) 1부.
- ⑤ 선급금보증보험증권(착공일로부터 60일) 1부.
- ⑥ 계약서(사본) 1부.
- ⑦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1부.
- ⑧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 준공 시

- ① [붙임 3] 사업장 위치도 1부.
- ② [붙임 10]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서 1부.
- ③ 사업비 산출내역 1부.
- ④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 완료 사진 1부.
- ⑤ 방지시설 가동 전, 후 복합 악취 측정기록부 각 1부.
- ⑥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각 1부.
- ⑦ 통장사본(시공업체) 1부.
- ⑧ 하자이행보증증권(VAT 제외, 2년, 5%) 1부.
- ⑨ 세금계산서(시공업체,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 ⑩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시공업체) 1부.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 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 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등)

2. 사업장 여건

가. 업체 현황

※ 사업장 위치, 사업장 면적, 테이블 수 등 (영업신고증, 건축물대장 등 참조)

나. 민원 발생 내용

※ 최근 민원 발생 현황 (해당 없으면 없음 표시)

다. 사업주의 의지 등

3.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방지시설 개요

-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 2) 저감시설 원리 등
- 3) 처리계통도
- 4) 성능 및 유지관리 보증사항 (오염 저감률, 유지관리 사항 등)

나. 방지사설 설계 사양(설계내역서, 성능보증 내용 필수 첨부)

※ 작성내용은 '25년 소규모 방지사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4. 공사 설계도면

※ 작성내용은 '25년 소규모 방지사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5.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작성내용은 '25년 소규모 방지사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6. 사후관리계획

【붙임 3】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아파트,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네이버(다음)지도 활용]

<사 진> (※ 외부전경, 간판, 내부사진, 배출구 외부사진, 악취 발생원 등)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준공일로부터 3년간 유지관리 의무 등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인(수혜사업장 / 시공업체)

(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 7】

보조금 반납 협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률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보조금 반환액 >

: 보조금 지원액 × [(1,095일(3년)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1,095일(3년)]

※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보조금 지급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025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 9】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 팩스	
시공업체명			
시공업체소재지		전화 팩스	
공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소요금액	원		
보조금 승인액	원		
자체부담액	원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계약서(사본) 1부. 2.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3.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4.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붙임 11】

보조금(선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④ 미세먼지·악취 발생시설			⑤ 방지시설 설치내역		
	발생시설명	규격	수량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시설용량	수량
설치기간	⑦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2025. . . ~ 2025. . . (공사 소요기간: . . . 개월 . . . 일)			
신청내용	⑧ 총 사업비		⑨ 보조금 신청액		⑩ 선금 신청액	
<p>위와 같이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선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5 년 . . . 월 . . .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청인 . . . (인)</p> <p>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위치도 1부. 2.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선금 지출 계획서(시공업체) 1부. 5. 선금보증이행증권 1부. (보험기한: 착공일로부터 60일) 6. 계약서(사본) 1부. 7.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1부. 8.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